

『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인적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조직 구축을 위하여 농촌분야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고
-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
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마을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안 제6조)
- 나. 마을만들기 사업지원 및 농촌협약제도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안 제13조)
- 다. 읍·면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~안 제19조)
- 라.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~안 제27조)
- 마.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(안 제28조~안 제38조)

바.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(안 제39조~안 제4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은,
 - 2021년부터 농산어촌개발사업이 공모가 아닌 협약사업으로 정부 정책이 변경 추진됨에 따라 사업전담부서 및 중간지원조직, 농촌 협약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
 - 협약의 전제조건 이행을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고, 과소화·노령화 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확보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